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의안번호 : 606
-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찬성의원 18명)
- 발 의 일 : 2023년 0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04월 03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3.08.01.) 및 시행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3.04.06 ~ 04.10.)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부조리 조례’이라 함)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 제정 2001.7.24., 시행 2002.12.5.)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인 1999년 1월 제정된 자치조례로,
  - 부조리 신고대상(제3조), 신고 방법(제4조), 신고자의 보호(제5조),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6조부터 제9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0조), 지급 방법(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부조리 조례는 199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547호)로 제정·시행되어 5차례의 일부개정과 4차례의 타법개정 등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국민익위법’이라 함)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익제보 조례’라고 함)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등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4월 참여연대, 호루라기 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지원모임 등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단체 등이 “공익제보지원조례” 청원에 따라 6월에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의회 의회 조례 제정 실무협의, 추진 단체와 서울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8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음.<sup>1)</sup>

**< 감사위원회 의견 : 원안 동의 >**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규정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부조리 조례”는 서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후 총 126건, 약 2억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999년
건수	126	3	4	5	7	4	3	6	94
금액	233,736	4,810	5,000	5,000	5,000	5,000	5,000	9,800	194,126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3년 3월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5년간('17년 ~ '22년) 부조리 신고 내용별 보상금 지급 현황은 <붙임 1> 자료 참조.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7.0』, 2021년 12월, 24면 참조.

- 다만, 조례는 실효성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동일성 등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폐지하는바, 폐지 사유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먼저, 2013년 8월 제정·시행된 “공익제보 조례”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유관단체 포함) 신고대상 및 공익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포함하여 ‘공익제보’로 정의(제2조제1호)함에 따라 “부조리 조례”에서 정한 부조리 신고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 또한, ‘부조리 신고’와 ‘공익제보 신고’ 방법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공익제보 신고’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안심번호사를 통한 신고로(“공익제보 조례” 제8조제2항), 신고자 보호에 철저하며(붙임 2) 공익신고, 비리(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 절차 참조),
  - ‘부조리 신고’와 ‘공익제보 신고’ 조사기간은 60일로 동일하며, “공익제보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현행 신고대상 등 비교 >**

구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li> <li>- 총 471개 법률 위반 행위(민간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조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등이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li> <li>-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 손실</li> <li>-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li> <li>-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li> </ul> </li> </ul> <p>※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에서 <b>부패신고(공직유관단체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에 포함되어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신고(공직유관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li> <li>-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li> <li>-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li> </ul> </li> <li>•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직무수행(사적이해관계 신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절차 등)</li> <li>-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li> <li>-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li> <li>- 그 밖에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ul>
<p><b>신고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도의 통합 처리</li> <li>- <b>익명신고에 따른 변호사 지원</b></li> </ul>
<p><b>처리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 10일 이내 통지, 조사 기간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 연장</li> </ul>

○ 그리고, “부조리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고(제10조),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나 “공익 제보 조례”에서는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상한 기준은 없고, 확정 금액의 30%가 지급되며(제11조),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도 규정(제11조의2)하고 있음.

※ 특히, “공익제보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35호)” 2017년 9월 21일 일부개정·시행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할 때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100분의 30)로서 상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 이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촉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의안번호 2046, 서운기의원 외 11명, 2017년 8월 14일 발의).

### 〈 “공익제보 조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비교 〉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정의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 내·외부 공익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지급 절차	신고자 보상금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추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구조금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지급 기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b>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상한 없음</b>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b>최대 2억원</b>	-

- 이는 동일한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체계상 통일성 저해로 서울시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하나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현행 부패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비교 〉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한도액 : 2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한도액 : 상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별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신고유형</th> <th style="width: 35%;">지급기준</th> <th style="width: 40%;">보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td> <td>금품향응 수수액</td> <td>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td> </tr> <tr> <td rowspan="5">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td> <td>- 추정·환수액</td> <td></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추정·환수액의 20%</td> </tr> <tr> <td>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td> </tr> <tr> <td>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 <td>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td> </tr> <tr> <td>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td> <td>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td> </tr> <tr> <td>40억원 초과</td> <td>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td> </tr> <tr> <td rowspan="3">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td> <td>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td> <td>2억원 이내</td> </tr> <tr> <td>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td> <td>5천만원 이내</td> </tr> <tr> <td>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td> <td>2백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 :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b>확정된 금액의 100의 30</b></li> </ul>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 다. 종합의견

- “부조리 조례”에서 부조리(부패)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등은 “공익 제보 조례”에서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 사안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신고 내용도 어느 조례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 “부조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도 “공익제보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감사위원회는 “2013년 “공익제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가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동일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부조리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는바, 향후에는 소관 조례에 대하여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부조리 조례” 폐지는 동일한 사안을 “공익제보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등 신고대상이 더 넓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 붙임 1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7 ~ 2022년도)

###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연도(건수)	신 고 내 용	지급금액(천원)	지급기준
계	지급건수 : 총 26건	지급액 : 29,810 천 원	
'22년 (3건)	채용 업무 부적정 신고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투출기관 직원 복무위반 신고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여비 부당수령 의혹 (권익위상환)	1,810	기타 부조리 신고
'21년 (4건)	복지센터 직원의 출장 등 복무위반 제보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시 사업소 직원의 복무위반 제보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실내보조체육관 운영 부적정 제보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사업소 물품구매 부적정 제보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20년 (5건)	비품계약 부적정 사항 제보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자치구 직원의 부적정 업무처리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신축공사 감리원 변경 부당 신고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예산 목적외 사용 비위 제보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공모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19년 (7건)	공공체육시설 재대관 행위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물품분실 후 허위보고행위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비위 신고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등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주민센터 직원의 초근수당 부정 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자치구 주차장 직원의 비위 신고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허위 자원봉사시간 부여 행위 신고	1,000	기타 부조리 신고
'18년 (4건)	자치구공단 임직원 경영평가 수검 부적정 행위 신고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자치구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의심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자치구 직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의심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의 작업자에 대한 갑질신고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17년 (3건)	공무원 금품수수 정황 신고	2,500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이내
	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 부정등록 목격신고	2,000	기타 부조리 신고
	투자기관 직원의 갑질신고	500	기타 부조리 신고

□ 공익제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보상금 지급 현황

연도(건수)	신 고 내 용	지급금액(천원)	지급기준
계	지급건수 : 총 5건	지급액 : 267,223 천 원	
'22년 (1건)	시립기관 보조금 횡령 등 신고	90,201	제보(17.6월) 당시 조례 기준 부패방지법 준용
'21년	-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사항 없음		
'20년 (1건)	일자리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	4,478	제보(19년)당시 조례 기준 확정금액의 30%
'19년 (1건)	시립기관 보조금 횡령 등 신고	40,590	제보(17.6월) 당시 조례 기준 부패방지법 준용
'18년 (2건)	복지재단의 운영 비리 신고	128,745	제보(13.8월) 당시 조례 기준 부패방지법 준용
	시 위탁 자활주거복지센터 비리 신고	3,209	제보(16.5월) 당시 조례 기준 부패방지법 준용

○ 포상금 지급 현황

연도(건수)	신 고 내 용	지급금액(천원)	지급기준
계	지급건수 : 총 100건	지급액 : 778,190천 원	
'22년 (11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대여 위반업체 신고	5,000	(1호) 공소제기 등
	어린이집 허위 직원등록 및 차명계좌 신고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3,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수탁대행기관 무단용도 변경 신고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약사법 위반행위 제보 신고	5,000	(1호) 공소제기 등
	권익위 상환 통보(보조금 부정수급 등) 6건	16,289	권익위 상환통보
'21년 (12건)	수당 부당 수령 의혹(권익위 통보)	2,901	권익위 상환통보
	수도계량기 부속 납품 사항 신고	5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센터 채용 관련 업무부적정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간선택제 채용 관련 업무 부적정 신고	4,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한시임기제 채용 관련 업무 부적정 신고	4,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수도계량기 부속 납품 사항 신고	10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업무 부적정 신고	4,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민간위탁 사업 예산 집행 등 부적정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센터 예산집행 부적정 신고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소방안전시설 점검 위법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센터 채용 부적정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	1,000	(4호) 과태료 부과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신고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20년 (25건)	방문판매업법 위반 공익신고	30,000	(1호) 공소제기 등
	용역계약 관련 부정 의혹 신고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센터 부당 운영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위반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센터 운영 부적정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연도(건수)	신 고 내 용	지급금액(천원)	지급기준
	콘크리트 폐수 무단 방류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기관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 사업 계약관련 규정 미준수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장애인콜택시 콜번호 개선 요청	1,000	(3호) 법령 등 제도개선
	운송시설 부당 운영 신고	7,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 공익신고	10,000	(1호) 공소제기
	시 출연기관 용역사의 용역비 부당 편취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 투자기관 제안서 평가 불공정	8,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센터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위반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시설 부당채용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투출기관장 부적정 국외출장 등 제보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센터 직원 부적정 채용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센터 수탁법인 회계부정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 위탁시설 과장의 예산낭비 등 제보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 팀장의 부정행위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업무중취득 개인정보이용 품위손상행위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시립시설 부당운용 제보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직장내 성희롱 인권침해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근무시간 중 품위손상행위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동료 임의 위치추적행위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19년 (15건)	시립시설 임직원 보조금 횡령 등 부패신고	3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투출기관 임원 예산 부정사용 등 부패신고	3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보조금 단체의 민간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복지재단 부당행위 신고	3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 공익신고	30,000	(1호) 공소제기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부패행위 신고	5,000	(4호) 과징금 부과
	시립 위탁기관장 등의 부패행위 신고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익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부적정 신고	10,000	(7호) 그 밖에 공익증진
	행사 참석자 허위보고 신고	3,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운전직 지원시 허위경력 제출행위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투출기관 보험업무 부적정 신고	3,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 신고	3,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위탁시설 장치구매 입찰 부적정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공익신고 직원 취하 종용사항 신고	4,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18년 (14건)	폐콘크리트 공공수역 무단방류	20,000	(1호) 공소제기
	관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1,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센터장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구청 공무원 향응수수 신고	3,000	(2호) 행정처분(징계,환수 등)

연도(건수)	신 고 내 용	지급금액(천원)	지급기준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공익신고	15,000	(1호) 공소제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익신고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자치구 보건소 사업조작 관련 공익제보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지도점검계획 사전유출 관련 공익제보	4,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횡령 의심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익신고	8,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공용차량 사적사용 제보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상수도 시스템 관련 공익제보사항 조사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교통체계 관리 분야 공익제보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 위탁센터 부실운영 제보	3,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17년 (23건)	센터장의 이동학대 행위 신고	5,000
장애인시설 인턴 후원금 강요요구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횡령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보도 설치 관련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위탁운영센터의 예산 부적정 집행사항 제보		6,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구립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당사용		2,5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어린이집 운영관리 부적정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유용 등 비리 제보		1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성희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센터 예산 집행 부적정 제보		1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신고		5,500	(1호) 공소제기 등
시 보조금 수탁기관 보조금횡령 신고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수영장 무허가공사 제보		2,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무허가 의료기기업체 제보		1,000	(1호) 공소제기 등
보조금 단체의 회계처리 부적정 등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구 공무원 식음료 대납 등 제보		2,5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복지관 인사 및 운영 비리 등 제보		5,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립기관 직원복무위반 등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위탁기관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당편취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위탁 센터 보조금 횡령 등 비리제보		30,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제보		1,0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시 조성단지 입주기업 계약위반사항 제보		500	(2호) 행정처분(징계, 환수 등)

## 붙임 2 공익제보(공익신고, 부패신고(부조리 신고) 접수처리 절차

절 차	구 분	내 용
1. 상담	제보상담	○ 상담창구(☎2133-3448~9, 이메일:watchdog@seoul.go.kr)
	안심번호사 상담	○ 안심번호사 이메일 상담 ※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번호사 개인 이메일 공개(10명)
2. 접수	접수창구	○ 온라인 : 응답소 내 공익제보창구 '시장 핫라인'
		○ 방 문 : 공익제보센터 방문 접수 ※ 접수 즉시 이메일 및 문자통보(접수번호 안내)
3. 분배	기관/부서 분배	○ 부패 신고 [공직자비리신고 = 부조리신고] - 시 공무원 : <b>조사담당관 직접 조사</b> - 구 공무원 : 구청 감사담당관 이첩 - 투자출연기관, 위탁·계약·보조금 기관 관련 시 소관부서 또는 소관기관 감사부서 이첩 ※ 구 공무원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b>중대사항은 조사담당관 직접 조사</b>
		○ 공익 신고 - 시에 행정처분권 : 시 소관 부서 이송 - 구에 행정처분권 : 구 감사담당관 이첩
	처리자 통보	○ 10일 내 처리자 선정 알림 ※ 처리기간 공지(근무일 기준 60일 산정 날짜 통보) ○ 부서요청에 의한 처리자 변경 시에도 문자, 이메일 통보
4. 처리	조사통보	○ <b>조사처리 기간 휴일 제외 60일 내(연장 가능)</b> ○ 처리결과 통보문서 과장 결재
	모니터링	○ 분기별 접수처리 현황 모니터링 : 시의회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보고 ※ 결과는 조치(처분)/개선/해당없음/취하 등으로 분류 구분 ○ 제보자 노출 등 상황 발생 시 조사 및 처분(요구)

### 붙임 3 부조리와 공익제보 조례 비교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제정목적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 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p>	
적용범위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무원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의 임직원 및 자치구의 공무원을 말한다.</p> <p>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신고대상)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p> <p>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p> <p>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p>	<p>부조리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익제보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 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 법」 상의 부패 신고, 「서울 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에 포함됨.</p>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p>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u>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u></p> <p>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p> <p>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p>		
신고방법	<p><b>제4조(신고방법)</b> ① 부조리신고는 <u>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u></p> <p>② 부조리신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b> ① 시민은 누구든지 <u>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u>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p> <p>1. <u>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u></p> <p>2. <u>시</u>            3. <u>시의원</u>            4. <u>위원회</u></p> <p>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u>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u>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p> <p><b>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b>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p>	<p>“공익제보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에서 익명신고의 경우 안심변호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p> <p>-</p>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p>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p> <p>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p> <p>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p> <p>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p>	
처리절차	<p><b>제4조의2(신고사항의 처리)</b> 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b> ⑤ <u>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신고자 보호	<p><b>제5조(신고자의 보호)</b>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p>	<p><b>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b>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p>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p>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b>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b>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p>	
협조자 보호	<p><b>제5조의2(협조자 보호)</b>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보복행위 금지	<p><b>제5조의3(보복행위 금지)</b>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보상금 지급기준	<p><b>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b>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는 별첨 참조</p>	<p><b>제11조(보상금)</b>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p>	<p>“부조리 조례”에서 보상금은 지급한도액이 20억원이고,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p>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시기	제1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적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하지만 “공익제보 조례”에서 보상금은 상한 없이 확정된 금액의 30% 지급함. 또한, 포상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방법	제12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보상금 지급제외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u>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	
보상금 환수	제14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분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 고
	<p>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p>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li> <li>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li> <li>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li> <li>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li> <li>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li> <li>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p>	

※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향응 수수액	금품 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